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강동구 제5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 또는 전시를 위한
전분주택 등은 조례로 정하는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을 위해 존치기간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공익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전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지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3년 범위 내 1회연장(기간 연장시 최장 6년)의 연장횟수 기준마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전본주택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 목적에 맞는 적정 연장 횟수를 두어 존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